

#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

- 환경, 정의, 법의 3면 관계를 바탕으로 -

한 상 운\*

## 차 례

- I. 서론
- II. '환경' '정의' '법'의 3면관계
- III.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인정여부 및 근거
- IV.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
- V. 결론

## I. 서론

환경정의라는 용어는 환경운동이나 환경철학, 그리고 환경정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주 익숙한 단어가 된지 오래이며, 늘 그렇듯이 그 의미에 관해서는 바라보는 관점이나 가치에 따라 다양하게 주장된다. 여기에서도 그 의미는 저자의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에 따라 다르게 주장될 수 있으며, 또는 기존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다. 법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환경정의는 환경과 관련된 철학이나 정책, 그리고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르지 않을까한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달라야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그 이유는 '법적'관점이란 다른 영역과 구별되는 법의 '본질'적 차원에서 환경정의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적 관점에서의 환경정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법학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래까지 법학계에서 이에 대한 담론이 활성화되어 있

---

\* 법학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활성화는 고사하고 이에 관한 진지한 법학적 논의를 찾아 보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보면,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관한 궁금증에는 환경정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함의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환경정의에 관한 법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환경정의가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전개된 것이 아니라 1960년대 이래 각종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분석과 함께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sup>1)</sup>이기에 아직 학문적 인식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법학자들이 환경정의에 관한 법적 규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인데, 이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좀 더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학적 논의의 필요성 판단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떠한 화제와 관련하여 사회적 논의가 무성한 경우에는 필요성을 새롭게 논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논의의 배경이 그 필요성으로 자각되어 시의 적절한 법적 주제가 되기 때문이다(물론 여기에도 '법과 사회'의 관계에 관한 담론이 내재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철학적이든 사회운동으로서든, 사회적 담론이 무성한 '환경정의'에 관한 담론은 법적으로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시 정부주도로 환경정의를 명시하고자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비록 그 시도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환경정의에 관한 규범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법학계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정의에 관한 법적 논의를 찾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단순히 법학계의 학문적 의무위반 내지 이행지체인가? 아니면 환경정의를 규범적 영역으로 수용하였을 때 초래할 수 있는 기왕의 법적 토대의 손상 내지 훼손의 우려 때문인가? 특히 후자인 경우에는 '환경정의'와 '근대법치국가'이래 수립해 온 인간중심의 법치국가'와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수 있는 위험이 전제되어 있다는

1) Gottlieb, R. *Forcing The Spr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Environmental Movement*, Island Press, Washington D. C. 1993; Dowin, M., *Losing Ground: American Environmentalism at the close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95; Edwards, B., *With liberty and environmental justice for all: the emergence and challenge of grassroots environmentalism in the United States*, in B. R. Taylor (ed.), *Ecological Resistance Movement: the Global Emergence of Radical and Popular Environmentalism*, SUNY Press, Albany, 1995.

점에서 환경정의의 규범적 영역으로의 수용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관점에서 환경정의에 회의적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자본주의 사회체제에서 환경부정의적 요소는 경제적 가치가 낮으므로 개인의 주거지나 직장 등을 결정할 때 선호도가 낮을 수 밖에 없고, 이것은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것이므로 결국 질 낮은 환경에 노출되는 개인은 스스로가 이를 감수해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하여 법치국가의 틀 속에서 논의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가 환경을 화두로 하는 새롭고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면 국가의 법질서도 이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바로 이 점에서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여하튼 환경정의에 관한 법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정의', '법'이라는 3자의 근본적 관계를 바탕으로, 법적인 논의의 틀 속에서 환경과 정의의 관계를 규명한다면 어느 정도 그 의미와 한계를 규정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논의 대상의 '의미'는 그것이 가지는 내적·외적 대상과의 '관계'를 통하여 파악되어야 하며, 그 관계를 통하여 파악된 '의미'는 그 관계로 인하여 '한계'가 설정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 비로소 그 '의미'의 실체가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하의 논의도 이러한 맥락으로 전개될 것이다.

## II. '환경' '정의' '법'의 3면관계

'환경' '정의' '법'의 3면관계는 3가지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들 관계에 시간성을 부여하면 첫째, '정의'와 '법'과의 관계, 둘째, '환경'과 '법'과의 관계, 셋째, '환경'과 '정의'의 관계로 순차적으로 나타난다.

### 1. '정의'와 '법'과의 관계

'정의'와 '법'과의 관계는 법철학적 중심과제로서 그리스·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

다. J. Rawls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공동체는 각종 사회문제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지향점이 '정의'이고<sup>2)</sup> 이것을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실체가 '법'이다. 따라서 '정의'는 '법'의 이념으로 기능하며, 비로소 규범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 경우의 '정의'는 그것을 구현하고자 하는 법의 원리(principle)가 되어 법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규정하게 된다. 정의의 구성요소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실체적 구성요소로서는 자유와 평등<sup>3)</sup>이며, 형식적 요소로서는 합의절차 등이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법도 자유와 평등, 그리고 합의절차 등을 그 내용으로 포섭하고 있어야 하며, 스스로 그 보장원칙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 법이 대표적으로 헌법이다. 헌법의 핵심적 내용은 자유와 평등을 포함한 기본권 보장 및 이를 위한 기본적 권력구조에 관한 사항이다. 또한 '정의'는 사회적 강자에 대한 배려(또는 배려의무)가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약자를 위한 정의이다. 따라서 '법'도 사회적·정치적 약자를 위한 배려로서 출발한다. 이것이 근대국가의 법치주의이다. 근대법치국가의 출발은 1789년 불란서 시민혁명을 통한 민주국가의 출현과 함께 정치적 약자인 소수의 자본가의 자본을, 정치적 다수인 무산자인 민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자유보장원칙 및 재산권 절대보장 원칙을 성문헌법에 명시하여, 국가로 하여금 이를 보장하게 하였다. 이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재산권의 상대적 보장으로 전환되며, 이는 수정된 자본주의로서의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사회국가(social state)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정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의무를 핵심적 내용으로 하며, 이것은 각국의 헌법에서 사회국가원리로서 수용되어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제헌헌법에서부터 사회국가원리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현재까지 국가과제로서 '사회정의'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sup>4)</sup>

## 2. '환경'과 '법'의 관계

'환경'과 '법'이 서로 조우하면서 관계를 설정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대단

2) J.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p.3.

3) 이 가운데 평등은 정의 충족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므로, 평등원칙의 위배는 부정의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반대로 평등원칙 충족이 곧 정의라고는 할 수 없다.

4)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 제32조 및 제33조의 근로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헌법 제34조 및 제36조에 의하여 여성, 노인, 아동 등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이 사회보장수급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히 짧은 기간에 해당된다. 주지하다시피 ‘환경’문제가 1970년대에서부터 부각되어 각국에서 ‘법’적 영역에서 관심을 갖고 ‘환경법’ 체계를 갖춘 것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환경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영역이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를 잉태하고 있다. 환경법의 규제영역은 직접적으로 규율목적 및 그 대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그 목적 및 대상은 법상 수용된 정의이념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환경‘법’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은 무엇인가? 이것은 환경에 관하여 ‘법’이 담아내야 할 ‘가치판단’이다. 판단되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이에 관한 담론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기저에는 환경과 경제와의 관계에 관한 철학적 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주류적인 환경에 관한 담론은 J. Bentham의 공리주의적 관점과 J. Locke의 자유주의적 관점에 따른 환경담론이지만, 오늘날 M. Bookchin의 사회구조론적 관점이나 A. Leopold의 생태주의적 관점 등이 유력한 견해로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요한 것은 ‘법’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가치논쟁에 관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환경철학이나 환경정책, 그리고 환경운동 등 각각의 영역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환경담론에 대하여 법적 영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는 범위와 한계에 관한 진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법’적 관점에서 유용하다고 판단된 ‘가치’는 환경‘법’상 강제된다는 점에서 환경철학이나 환경운동 등 제반영역에서 논의되는 진보적 내용을 모두 담아내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합의의 결과는 법적 영역으로 수용되어 환경법상 보호대상인 ‘환경’의 범위가 설정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하여 비로소 환경법의 규제목적과 규제대상도 명확해질 수 있게 된다. 이를 feedback 해보면, 즉 현행 실정법상 존재하는 환경법의 규제목적과 규제대상을 규명하면, 환경법상의 보호대상인 ‘환경’의 범위도 밝혀질 수 있고, 그렇다면 적어도 현행 환경법이 담아내고 있는 가치판단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3. ‘환경’과 ‘정의’의 관계

‘환경’과 ‘정의’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는 가장 최근에 부각된 issue로서 1980년대 ‘정의’의 최소조건인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부정의사례가 환경영역에서 발생되자 이를

시정하기 위한 환경정의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미국에서는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에 관한 문제를 환경적 인종차별주의(environmental racism)와 동일한 의미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문제는 환경정책이 빈곤층 및 소수민족에게 차별적으로 부담을 부과한다는 인식을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sup>5)</sup> '환경'과 '정의'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크게 보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환경담론과 관련하여 보호대상으로서의 '환경'의 범위에 관한 문제와 둘째, '정의'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어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의 문제는 환경정의의 접근방식과 주로 관련되어 있으며, 후자의 문제는 환경정의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대상으로서의 '환경'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인간중심적 사고와 자연중심적 사고중 어느 입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접근방식을 달리하게 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포섭하고 있다. 먼저 환경문제의 공간성을 고려하여 국가내의 환경문제에 치중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 환경문제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인지의 문제, 둘째, 환경문제의 역사성을 고려하여 현세대의 문제로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세대의 환경까지 고려할 것인지의 문제, 셋째, 환경향유의 권리를 인간에게만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에도 확대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특히 이 가운데 둘째·셋째 문제는 기존의 법학에서 정면으로 다루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법학계에서는 현세대의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근대법치국가의 법이념에 따른 법적 논리를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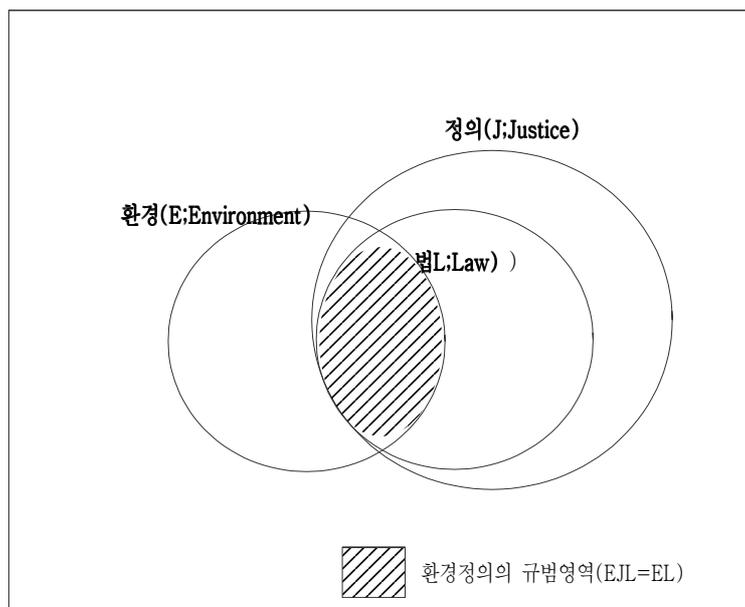
또한 '정의'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구성요소로서 자유, 평등, 합의절차를 인정하더라도 그 강조하는 바에 따라 환경정의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자유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느냐, 아니면 평등주의적 요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전자는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그러나 후자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국가의 환경배려의무를 중심으로 환경정의를 규정하게 된다. 환경정의는 특히 평등주의에 기반한 Movement로서 시작되었음은 앞에서도 기술한 바 있다. 이것은 환경영역에서의 최소한의 정의 충족요건인 평

5) Jeffrey M. Gaba, Environmental Law, Thomson/West, 3rd edition, 2005, p.43.

등원칙에 위배되는 불평등사례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 의미를 법상의 환경정의의 의미와 동일시 할 필요는 없으며, 법영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할 몫으로 유보되어 있다고 본다.

#### 4. 소결

환경·정의·법의 3면관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환경'은 존재하는 사실로서의 보호되어야 하는 영역이며, '정의'는 윤리적·사회적 가치판단의 내용이고, '법'은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판단을 가리킨다. 즉 '환경'은 사실(sein)적 영역이고, '정의'와 '법'은 당위(sollen)의 영역이다.

첫째, 정의(J)와 법(L)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의는 법을 포함하는 관계이므로( $J \supset L$ ), 따라서 양자가 겹치는 법정의(LJ) 영역은 법(L) 자체의 영역이다. 이것은 양자가 중첩된 법정의(LJ)영역을 제외한 정의(J)의 영역에는 아직 규범화되지 않은 사회적(s)·윤리적(e) 가치판단 등이 유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J-L = s + e$ ; 법과 도덕의 구별문제).

둘째, 환경(E)과 법(L)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자는 포함관계가 아니며, 사실(sein)과 당위(sollen)로 구별되지만 그 겹치는 부분은 환경법(EL), 즉 환경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 가치들이라고 할 수 있다( $E \cap L = EL$ ). 환경영역에는 법적 가치이외에 철학(ph)·경제(ec) 등 기타의 가치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이 유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L = ph+ec+etc$ ; 환경법의 환경철학 및 환경경제 등과의 구별문제). 그리고 법영역에 유보되어 있는 가치들은 환경영역 이외에 적용될 무수히 많은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등 수많은 법적 가치(etL)들이 유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L-E = etL$ ; 환경법의 독자성 문제).

셋째, 환경(E)과 정의(J)관계도 포함관계가 아니며, 사실(sein)과 당위(sollen)로 양자는 구별된다. 다만 그 겹치는 부분을 환경정의(EJ), 즉 환경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사회적·윤리적 가치판단들이라고 할 수 있다( $E \cap J = EJ$ ). 이것은 환경영역에도 환경정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무생물, 우주 등). 그 역으로 정의영역에는 환경정의이외에 정치적 정의, 사회정의, 경제정의 등 기타의 정의가 유보되어 있다(특히 사회정의와 환경정의와의 구별문제).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위 그림에 따르면 환경(E)과 정의(J), 그리고 법(L)이 모두 교차하는 영역이 환경정의의 규범적 영역(EJL)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를 달리 표현하면 “환경영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으로 강제되어야 하는 유용한 가치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림에서 보다시피 환경정의의 규범적 영역(EJL)은 환경정의(EJ)나 법정의(LJ) 영역보다는 작고, 환경법(EL)영역과는 같다( $EJL = EL \subset EJ, LJ$ ). 이것은 당연한 결론이지만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에 관한 논의의 범위는 환경법 영역에 국한되어서 환경정의론이나 법정의론보다 그 범위가 축소되어 좀 더 명확히 구체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환경정의(EJ)와 법정의(LJ)의 관계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EJ \neq LJ$ ). 이것은 환경정정의가 모두 법정정의에 포섭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듯이 법정정의(LJ)에는 환경정의 이외에 사회정의 등이 유보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III. 현행법상 환경정정의 인정여부 및 근거

#### 1. 인정여부

##### (1) 견해대립

현행법상 환경정정의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인정 여부 및 그 근거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법학계에서는 환경정정의에 대한 논의 자체가 거의 없으므로 환경정정의 인정여부에 대한 주장도 없는 실정이다. 다만 환경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환경정정의의 수용이 있긴 하지만 이는 법학적 개념으로서의 수용이 아니라 환경정정의의 일반적 개념의 수용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법학적 관점이 아닌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환경정정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 이러한 입장은 환경정정의가 원래의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비판적이다. 즉 환경정정의는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점이 별로 없으며, 오히려 빈곤한 지역사회를 더욱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본다.<sup>6)</sup>

이와 같은 부정적인 입장의 주된 근거는,

첫째, 통상적인 산업전과는 달리 소수인종이 화학물질이나 오염물질에 보다 더 노출되어 있다는 통계는 매우 신빙성이 낮다는 점,<sup>7)</sup>

6) 미국 Brookings Institute의 Christopher Foreman이 1999년에 펴낸 저서는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Foreman Jr., Christopher H., *The Promise and Peril of Environmental Justice*, Brookings Institute, 1999.

7) Foreman Jr., Christopher H. 1999. *The Promise and Peril of Environmental Justice*, Brookings Institute, p. 3. 이외에도 소수인종이 화학물질이나 환경오염에 보다 더 노출되어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둘째, 관련 사건들에서 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이 환경정의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환경정의는 그 사건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

셋째, 환경정의의 핵심적 개념요소인 '공정'(fairness)이나 '의미있는 참여'(meaningful involvement) 같은 개념은 실질적 정책의 목적으로는 모호하다는 점,<sup>8)</sup>

넷째, 환경정의의 운동으로 인하여 환경문제를 형평, 정의 등 불확정 의미로 까지 확대하여, 주거환경·비위생·실업 등 본래 환경정책의 대상이 아닌 의제를 환경정책에 포함시켜 오히려 환경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한다는 점,

다섯째, 환경정의가 정책의 희생양을 찾아서 대중이 분노를 터뜨리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마땅히 들어와야 할 시설이 들어오지 못해서 지역 공동체에 더 큰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

여섯째, 환경정의는 실질적인 갈등해결의 방안을 제시할 수 없으면서도 정부내에 각종 위원회를 양산하여 정책의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점<sup>9)</sup>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정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에는 한국에서의 논의조차 이념적인 시각에서 경계하는 입장도 포함되어 있다.<sup>10)</sup>

## (2) 미국에서의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

미국에서 대부분의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환경위험시설물 입지에 있어서

서는 Vicki Been and Francis Gupta, Coming to the Nuisance or Going to the Barrios? A Longitudinal Analysis of Environmental Justice Claims, 24 Ecology L. Q. 1, 1997 참조.

8) Foreman Jr., Christopher H. The Promise and Peril of Environmental Justice, Brookings Institute, 1999, p. 11.

9) Foreman Jr., Christopher H. The Promise and Peril of Environmental Justice, Brookings Institute, 1999, p. 69.

10) 즉, 환경정의는 인종문제라는 특유한 사회적 골칫거리를 안고 있는 미국에서 논의된 것으로 그것을 구태여 우리 사회에 접목시키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라고 보면서, 이는 아마도 사회의 모든 갈등을 계층 개념으로 설명하고, 또 갈등을 조정해서 사회적 변혁을 가져오려는 우리나라의 좌파적 풍조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상돈, 환경정의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30집1호, 2006/8, 76쪽; 이상돈, 지역과 소득을 고려한 환경 정책?, 첨단환경기술, 1999/6, 23-25쪽.

인종과 소득이 주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다.<sup>11)</sup> 최초의 환경위험과 소득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것은 1971년 미국환경질위원회(CEQ, the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이다. 즉 CEQ는 그 연차보고서에서 낮은 소득계층의 사람들이 대기오염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환경질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인종과 계층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1987년 기독교연합 인종정의위원회(The Commission for Racial Justice of the United Church of Christ)의 보고서인 “Toxic Wastes and Race in the United States”는 폐기물처리장이 소수인종과 빈민층의 주거지역에 편중되어 입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특히 소득수준보다 인종이 주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부정의 사례에 관한 연구결과는 권위있는 유엔기구나 국가기관들로 하여금 환경정책 수립시 환경정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즉 1992년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CED)는 본격적으로 환경정의를 구현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미국의 환경보호청(EPA)도 1992년에 “Environmental Equity: Reducing Risks for All Communities”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기존의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들이 소수인종과 저소득층에게 환경적 부담과 건강상 위험을 불합리하게 부담하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 보고서는 환경정의와 관련한 EPA의 첫 번째 광범위한 보고서로서, 이후 미국의 환경정책수립시 환경정의를 정책의 주요 원리로서 수용하게 되는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미국에서의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는 위해폐기물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도시지역 환경과 관련하여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 Frumkin은 도시지역의 환경을 주거, 교통, 공원 또는 녹지, 기타 주변시설로 구분하여 육체적 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도 환경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sup>12)</sup> 2005년 Omer는 이스라엘의 아랍인과 유대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비교하여 소득과 인종에 따라 사회적으로 제공받고 있는 공공서비스 시설면적이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결과적으로 환경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sup>13)</sup> Jerret은 2004년 각 지역의 사망률과 지역내의 사회·

11) 권해수, 우리나라의 환경정의운동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2호, 2002/8, 154쪽.

12) Frumkin, H., Health, Equity and the Built Environment,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 113, p.290.

13) Omer, I. et al, Distribute Environmental Justice in the city: Differential Access in two Mixed Isrel Cities,

경제적, 인구학적 특성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 대기오염노출에 따른 건강영향과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입증하였다.<sup>14)</sup>

미국의 환경정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득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환경피해 및 불평등의 관계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최근에 혐오시설물 입지결정과정에서의 지역·계층 갈등, 국가산업단지조성을 둘러싼 지역갈등, 소득과 지역내 분진농도의 관계, 소득과 대기오염도간 관계, 소득계층별 환경저감비용의 분담 등이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들 연구는 소득계층별 환경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sup>15)</sup> 다만 세대간 갈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sup>16)</sup> 또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환경피해와의 정확한 인과관계에 대한 실체적 규명은 미흡한 실정이다.

### (3) 소결론

결론적으로 이상과 같은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환경정의를 부정하는 입장의 논거들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환경정의는 환경보호라는 지구적 과제를 수행하면서 인간 간의 자원배분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환경부담의 방지와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민주적 참여의 보장이라는 점을 핵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 헌법하에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하루 속히 환경정의의 구현을 위한 법제도적 수용이 요청된다고 본다.

## 2. 법적 근거

TESG 96(4), p.433-442.

14) Jerret, M. et al., Do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Modify the Short Term Association Between Air pollution and Mortality? Evidence from a Zonal Time Series in Hamilton, Canada, JEOH. 58, p.31-40.

15) 이와 관련해서는 김일중/신동천, 환경오염저감비용의 소득계층별 분담, 자원·환경연구 제9권 제3호, 2000; 강신욱 외,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표변화 추이 -주요 OECD국가들과의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권해수, 환경정의 관점에서의 환경정책 평가와 과제, 환경과 생명 23, 2003, 112-121쪽;

김선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기오염이 천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5. 등 참조.

16) 권해수, 우리나라의 환경정의운동 연구, 한국 사회와 행정 연구 제13권 제2호, 2002/8, 152쪽.

## (1) 미국에서의 환경정의의 법적 근거

미국에서는 환경정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적용되는 근거법규는 미연방 14차 수정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과 행정명령 12898호(Executive Order 12898), 1964년 인권법 제6장(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및 개별 환경법조항들이다.<sup>17)</sup> 즉 환경정의에 위배되는 정책이나 조치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평등보호조항을 근거로 미연방대법원에 헌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소제기를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의 '의도적 차별'(intentional discrimination)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명령 12898호는 1994년 Clinton 대통령이 연방 행정청에 환경정의문제를 고려할 것을 의무화한 것으로서 다만 이를 근거로 개인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또한 인권법 제6장은 연방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나 단체는 차별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개인은 인권법을 근거로 EPA에 대하여 주 당국이 차별적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 (2) 한국에서의 환경정의의 법적 근거

헌법상 환경정의에 관한 규정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환경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왕성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정의 관한 입법미비는 환경정의의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을 의미하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정책시행의 예측가능성과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99년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환경정의를 법안에 반영하려고 시도하였지만 채택되지는 못하였다.<sup>18)</sup>

17) Jeffrey M. Gaba, *Environmental Law*, Thomson/West, 3rd edition, 2005, p.43-44.

18) 1999년 환경부 개정시안인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 제2항에서는 "환경적 혜택은 현재의 국민으로 하여금 지역이나 소득수준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음이 없이 널리 골고루 향유되어야 하며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지역적·경제적 이유로 환경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 것과 현재 환경을 오염·훼손하지 아니하고 미래에 계승토록 할 것을 의미하는 환경정의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입법미비로 인하여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의에 대한 현행법상의 태도를 관련규정의 해석론에 의하여 규명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환경정의가 현행법의 해석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문제, 둘째, 환경정의가 현행법상 해석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는 경우 그 근거에 관한 문제이다. 이 문제들은 논리전개상 구별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생각건대 환경정의는 현행 헌법해석상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헌법 제35조는 환경에 관한 내용을 기본원리가 아니라 기본권형태로 규정하고(동조 제2항), 국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환경보전의무를 국가와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다(동조 제1항). 이것은 환경보장성이라는 환경정의의 속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둘째, 환경정의의 환경형평성은 환경영역에서의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의 평등의 원칙조항에 의하여 근거지워 질 수 있다. 이것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말하며, 그 중심내용은 기회균등과 자의의 금지이다.

셋째, 환경정의의 절차적 적정성은 환경정의의 구현과정에서 국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조항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헌법상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는 국가권력행사가 정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청문 등 국민의 직접적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넷째, 이외에도 환경정의와 관련된 현행 헌법상 규정으로서 미래세대까지 고려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전문(前文)이 있다. 또한 환경정의를 통한 궁극적 목적 가치로서의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환경권을 보장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 제2문의 기본권보장조항,<sup>19)</sup>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개별적 재산권에 대한 제한의 가능성을 유보하고

19) 독일은 1983년 ‘국가목표규정과 입법위임’에 관한 전문가위원회 다수견해의 제안에 의하면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관례에 의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이론은 기본법 제2조와 제14조에 한정하여 개인의 생명·건강·재산에 관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제거의무로서 환경보호만 가능하며, 미래세대의 생명이나 건강, 그리고 공공용지 및 하천·물·대기·토지 등의 보호나 자연환경이나 생태계 보호 등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

있는 헌법 제23조 제1항 제2문·제2항·제3항, 공공재로서 자연자원 등에 대한 국가 소유를 전제로 하는 헌법 제120조 제1항과 국토와 자원에 대한 국가의 보호와 균형에 대한 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제2항, 국민모두의 생산 및 생활 기반이 되는 토지에 대한 이용 및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헌법 제122조 등을 들 수 있다.

#### IV.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sup>20)</sup>

##### 1. '환경정의'의 개념

환경정의의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다만 다소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념들은 이와 같은 환경정의의 속성에 터잡아 논의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최소공통분모는 계층간의 형평성이라고 본다. 환경정의의 개념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 보면 먼저, 환경정의를 환경법에 의한 평등한 보호라는 견해,<sup>21)</sup> 또는 환경자원 향유라는 편익과 환경피괴로 인한 피해에 있어서 시간적·공간적으로 평등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라는 견해,<sup>22)</sup> 종족·피부색·국적 또는 소득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환경법과 규정, 그리고 정책의 집행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취급되고 의미있는 참여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sup>23)</sup> 그리고 절차적 측면에서 환경정의라고 하여 환경피괴의 분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그러한 영향이 배분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목표규정을 둘 것을 요청하였다. Bundesministerien der Innen- und der Justiz(Hrsg.) Bericht der Sachverständigenkommission "Staatszielbestimmung/Gesetzgebungsanträge", 1983. S.90 ff.

20)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EJL)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의'의 의미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환경정의의 의미'는 이 글의 본래 목적인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가 아니라 환경과 정의의 교집합인 '환경정의'(EJ)를 의미한다.

21) Bryant, B., "Issues and Potential and Solutions for Environmental Justice: An Overview" in B. Bryant(ed.), *Environmental Justice*, Washington D. C. Covelo, California: Island Press. 1996, p.5.

22) 토다 키요시, 김원석 역, 환경정의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사, 1995, 304-305쪽.

23) 이것은 미국 EPA의 입장이다. Wenz, P., *Environmental Justi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1988; Smith, D. M., *Geography and Social Justice*, Blackwell. London, 1994.

되는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민주적 참여<sup>24)</sup>와 깨끗한 환경에 대한 정보, 공청회, 보상 및 환경오염피해자의 권리회복<sup>25)</sup>이 실현되는 것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환경정의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는 다양하며 이것은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또는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 이외에도 환경형평(Environmental equity), 환경차별(Environmental discrimination), 환경인종주의(Environmental racism)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용어들의 개념상 의미는 약간씩 차이가 있으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환경정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sup>26)</sup>

먼저 환경(부)정의는 환경위험의 공간적 분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적인 측면을 중요시하면서<sup>27)</sup> 연령, 성,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환경동인의 해로운 효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법과 정책적 과정을 중시한다. 이와 달리 환경형평(Environmental equity)은 환경의 쾌적성과 불이익의 분포라는 결과를 강조하면서 특정의 결과나 원인을 전제로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기술적이며 중립적인 성격<sup>28)</sup>을 갖는다. 또한 환경차별(Environmental discrimination)은 광범위하게 사용되지만, 종종 환경인종주의(Environmental racism)와 마찬가지로 인종에 관련되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진다. 특히 환경인종주의의 의미는 혐의와 광의로 구별될 수 있는데 혐의는 인종주의자의 '의도'에 근거하여 차별을 정의하지만, 광의는 의도적인 경우는 물론 비의도적인 경우에도 차별과 인종

24) Bryant, B., "Issues and Potential and Solutions for Environmental Justice: An Overview" in B.

Bryant(ed.), *Environmental Justice*, Washington D. C. Covelo, California: Island Press, 1995.

25) Cutter, Susan L., "Race, Class and Environmental Justi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9(1), 1995;

Ferris, Deeohn and David Hahn-Baker, "Environmentalists and Environmental Justice" in Bunyan

Bryant(ed.), *Environmental Justice*, Washington D. C. Covelo, California, Island Press 1995; Capek,

Stella M., "The 'Environmental Justice' Flame: A Conceptual Discussion and an Application", *Social*

*Problems* 40(1), Feb..

26) 이인희, 환경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환경정의 연구의 연구쟁점과 연구경향, 공간과사회 제29호, 2008,

33-38쪽.

27) Zimmerman, R., Issues of classification in environmental equity: How we manage is how we measure,

*Fordham Urban Law Journal* 21, 1993, pp.633-670.

28) Liu, F., *Environmental Justice Analysis: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2001, CRC Press LLC.

주의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sup>29)</sup> 그러나 환경정의는 특정의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지 않고, 모든 사회내 공동체에 적용되는 개념으로서 환경과 관련된 공공정책 및 집행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인종들에게 불공평하게 환경부담을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된 고려대상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환경정의를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조적 틀로 삼으려 한다.

## 2. '환경정의'(EJ)의 개념적 속성

앞의 II장에서 다룬 '환경'과 '정의'의 관계를 통하여 환경정의의 의미속에 포섭시킬 수 있는 속성들을 파악해 보면, 먼저 '정의'의 내용적 구성요소로서 자유, 평등, 합의절차는 각각 환경정의의 의미를 환경권 보장, 환경평등, 절차적 정의로 나타난다. 그리고 환경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인간중심주의와 자연(생태)중심주의, 국내적 환경과 국제적 환경, 세대내 환경과 세대간 환경, 세대내 계층간 환경을 포섭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정의'의 속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환경보장성, 환경형평성, 절차적 정당성이 환경정의의 속성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환경보장성'은 국가나 개인에 의한 환경침해를 방지 또는 저감하여야 하며, 이것은 환경보호라는 국가목표규정을 설정하거나 환경권 보장의 방식으로 추구될 수 있다.

둘째, '환경형평성'은 환경편익과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의미하며, 환경영역에서의 불합리한 사유에 의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형평성은 수평적·수직적·세대간·지역간·국가간 형평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들고 있다.

셋째, 절차적 정당성은 환경편익과 비용부담 등의 환경정책결정의 과정과 절차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환경정의의 3가지 속성은 '환경정의'의 개념을 설정하는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3가지 속성이 적용되는 '환경영역'은 세대와 국경을 뛰어 넘어 인간은 물론 자연 및 생태까지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29) Downy, L., Environmental injustice: Is race or income a better predictor?, Social Science Quarterly 79, 1998, pp.766-778.

### 3. 환경정의의 규범적 의미

이처럼 다양한 논의에서 보듯이 환경정의가 무엇인가에 관한 명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환경정의는 환경을 보호하면서 인간 간의 자원배분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환경피해의 차별방지와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sup>30)</sup> 즉 환경정의는 환경문제가 전통적인 인간 상호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에 관한 문제로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종래의 계층, 여성, 인종간의 차별에 관한 사회문제가 맞물려 논의되어야 하며,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분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 뿐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비용과 편익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도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특정 집단이나 지역사회가 환경피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환경적 운명을 통제하는 능력은 정치적 접촉, 정책의 차별적 집행 등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sup>31)</sup>

현행법상 환경정의는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헌법해석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그 법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환경과 정의의 교집합으로서의 환경정의(EJ)”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즉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의미는 현행법체계가 근대적 법치국가의 소산인 ‘인간’을 위한 ‘법’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적용영역으로서의 ‘환경’의 범주에서 차이가 있다. 근대적 법치국가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권리’ 중심의 법학이므로 결국 환경정의는 환경에 관한 ‘인간의 권리’중심으로 그 법적 의미가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의 범위와 관련하여 ‘인간’은 원칙적으로 국적인으로서의 ‘국민’에 한정되며, 다만 영토주의에 따라 국내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간의 환경정의의 실현은 국제법규나 조약 등 국제환경법에 의하여 규율되며, 국내 환경

30) Cumminham, W. P., *Environmental Science*, McGraw-Hill, London, 2001; Low, N. P. and B. J. Gleeson, Justice in and to the environment: ethical uncertainties and political practices, *Environment and Planning*, 1997, p. 21-42.

31) Hurlay, Andrew, *Environmental Inequalities : Class, Race and Industrial Pollution in Gary, Indiana, 1945-1980*,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p.173.

법이 적용될 수 없다. 또한 국가는 현세대내의 '국민'에 한정된 환경보호의무라는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구체적인 환경고려의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선언적·윤리적 의무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행법상 환경정의의 의미는 첫째, '국민'을 위한 '환경보호', 둘째, 환경영역에서의 평등보장, 셋째, 환경영역에서의 국민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 V. 결론

결론적으로 법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정의의 의미와 내용은 좀 더 전향적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환경정의의 입법화 시도와 더불어 법적 논리의 전개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법적 과제로서 유보되어 있다.

다만 환경정의에 관한 연구의 발단이 미국에서의 인종문제라는 특수한 국가적 상황을 전제로 발전된 것임은 틀림없지만 환경정의의 의미를 인종차별에 따른 문제에 국한하여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의무화하고 있는 헌법상의 사회국가원리와 환경국가원리<sup>32)</sup>와의 조화점을 근거로 우리 헌법해석상 환경정의가 요구된다는 점은 명확하다고 본다. 즉 현행법상의 환경정의의 의미는 헌법상의 다른 기본원리처럼 헌법국가의 틀 속에서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며, 헌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다만 미국의 EPA(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는 환경정의를 “공공정책 수립 및 시행절차에 있어서 인종이나 가계소득수준 등과 상관없이 공평하게 대우 받는 것”이라고 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것은 현행 한국법체계에서도 주로 외국근로자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정의의 적용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사회경제적 약자는 물론, 여자나 어린이 및 노인 등 생물학적 약자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생태계 전반에 까지 그 적용범위

32) 헌법도 환경보호라는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국가에 대하여 환경보호의무를 이행할 것을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이 환경국가를 표방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환경국가의 목표는 곧 환경정의의 실현이다.

를 확대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간활동으로 인한 환경부담의 저감과 미래세대 및 전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정의를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환경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사후적으로 이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강신욱 외, 우리나라의 빈곤 및 불평등 관련 지표변화 추이 -주요 OECD국가들과의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 권해수, 우리나라의 환경정의운동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3권 제2호, 2002/8.
- 권해수, 환경정의 관점에서의 환경정책 평가와 과제, 환경과 생명 23, 2003.
- 김선영,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대기오염이 천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005.
- 김일중/신동천, 환경오염저감비용의 소득계층별 분담, 자원·환경연구 제9권 제3호, 2000.
- 이상돈, 환경정의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문집 제30집1호, 2006/8.
- \_\_\_\_\_, 지역과 소득을 고려한 환경 정책?, 첨단환경기술, 1999/6.
- 이인희, 환경불평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환경정의 연구의 연구쟁점과 연구경향, 공간과사회 제29호, 2008.
- 토다 키요시, 김원석 역, 환경정의를 위하여, 창작과 비평사, 1995.

### <외국문헌>

- Bryant, B., "Issues and Potential and Solutions for Environmental Justice: An interview" in B. Bryant(ed.), *Environmental Justice*, Washington D. C. Covelo, California: Island Press. 1996.
- Bundesministerien der Inneren und Justiz (Hrsg.) Bericht der Sachverständigenkommission "Staatszielbestimmung /Gesetzgebungsasufträge", 1983.
- Cumminham, W. P., *Environmental Science*, McGraw-Hill, London, n, 2001.
- Cutter, Susan L., "Race, Class and Environmental Justi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9(1), 1995.

- Dowin, M., *Losing Ground: American Environmentalism at the close of the Twentieth Century*, The MIT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1995.
- Downy, L., Environmental injustice: Is race or income a better predictor?, *Social Science Quarterly* 79, 1998.
- Edwards, B., With liberty and environmental justice for all: the emergence and challenge of grassroots environmentalism in the United States, in B. R. Taylor (ed.), *Ecological Resistance Movement: the Global Emergence of Radical and Popular Environmentalism*, SUNY Press, Albany, 1995.
- Ferris, Deohn and David Hahn-Baker, "Environmentalists and Environmental Justice" in Bunyan Bryant(ed.), *Environmental Justice*, Washington D. C. Covelo, California, Island Press 1995.
- Foreman Jr., Christopher H., *The Promise and Peril of Environmental Justice*, Brookings Institute, 1999.
- Gottlieb, R., *Forcing The Spring: The transformation of the American Environmental Movement*, Island Press, Washington D. C. 1993.
- Hurlay, Andrew, *Environmental Inequalities : Class, Race and Industrial Pollution in Gary, Indiana, 1945-1980*, Chapel Hill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5.
- Jeffrey M. Gaba, *Environmental Law*, Thomson/West, 3rd edition, 2005.
- Jerret, M. et al., Do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Modify the Short Term Association Between Air pollution and Mortality? Evidence from a Zonal Time Series in Hamilton, Canada, *JEOH*. 58.
- Liu, F., *Environmental Justice Analysis: Theories, Methods, and Practice*, CRC Press LLC, 2001.
- Low, N. P. and B. J. Gleeson, Justice in and to the environment: ethical uncertainties and political practices, *Environment and Planning*, 1997.
- Rawls, J.,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Smith, D. M., *Geography and Social Justice*, Blackwell. London, 1994.
- Vicki Been and Francis Gupta, Coming to the Nuisance or Going to the Barrios?  
A Longitudinal Analysis of Environmental Justice Claims, 24 *Ecology L. Q.*  
1, 1997.
- Wenz, P., *Environmental Justi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lbany, 1988.
- Zimmerman, R., Issues of classification in environmental equity: How we manage  
is how we measure, *Fordham Urban Law Journal* 21, 1993.

**[Abstract]**

The Normative Meaning of Environmental Justice

- Based on the triangular relations between the environment, justice, and law -

Han, Sang-Woon

Within the context of current laws, environmental justice has three meanings. The first represents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of people; the second being the assurance of equality throughout the environmental sphere; and the third assuring public participation dur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Like other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s, environmental justice within the current legal system is significant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 and is valuable. Thus, the constitution of Korea has been written to ensure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o designate environmental protection duties for the state. This means that Korea is an environmentally-friendly country with the aim of realizing environmental justice.

Still, the definitions and cont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need to be extended in a more positive and future-oriented way, and attempts to legislate and elaborate on the legal logic of environmental justice remain.

주 제 어 환경정의, 환경형평, 환경차별, 환경인종주의, 환경정의의 개념

Key Words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equity, Environmental discrimination, Environmental racism, definitions of environmental justice